

조례안예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 115호

창원시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 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창원시의회의장 김 이 근

1. 자치법규명

「창원시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창원시의 건강 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과 창원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맨발걷기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전화:055-225-5377,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cost403@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강창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17
----------	-----

발의연월일: 2023. 10. .

발 의 의 원: 강창석 · 김경수 · 김묘정 · 김혜란 · 이정희
이해련 · 황점복 의원(7명)

찬 성 의 원: 구점득 · 손태화 · 정길상(3명)

1. 제안이유

창원시의 건강 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과 창원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맨발걷기 활성화 시책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창원시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창원시의 건강 친화적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창원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보행자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
3. 맨발 보행로의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근린공원의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원 내 도로 일부에 맨발 보행로를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의 조성·관리
2. 세족대·신발장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관리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도시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3에 의하여 도시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도시공원이 지니고 있는 기능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해당도시지역 전반에 걸친 환경보전, 휴양·오락, 재해방지·공해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공원이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이용계획상 또는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새로이 별표 3의 규모에 적합한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지역에는 그 면적을 별표 3의 기준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유치권 안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시공원이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과 같은 기능을 하거나 같은 기능을 포함한 복합기능을 하는 경우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유치거리 및 규모는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표 3의 기준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도시공원은 공원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시공원에 모였다가 흩어질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3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도시공원의 입지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시공원에 모였다가 흩어지는데 지장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도시공원의 경계는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토지이용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위치로 정하여야 한다.

제8조(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고 녹지공간배치 등과 연계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공원의 기능이 수행되도록 할 것
2. 세부적인 공원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
3. 공원조성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 가. 개발목표 및 개발방향
 - 나. 자연·인문·관광환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자료
 - 다. 필지별 토지 소유 및 이용현황
 - 라.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의 이용, 동선(動線), 공원시설의 배치, 범죄 예방, 상수도·하수도·쓰레기처리장·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조경 및 식재 등에 대한 부문별 계획
 - 마. 공원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 바. 공원조성을 위한 연차별 집행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 사.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의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획
4. 공원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공원조성계획의 결정·고시가 이루어진 후 조속히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별표 3]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제6조 관련)

공원구분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
1. 생활권 공원			
가. 소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나. 어린이공원	제한 없음	250미터 이하	1천5백제곱미터 이상
다. 근린공원			
(1)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주로 인근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 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 공원)	제한 없음	500미터 이하	1만제곱미터 이상
(2) 도보권 근린공원(주로 도보권 안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 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 공원)	제한 없음	1천미터 이하	3만제곱미터 이상
(3)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 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 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 원)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 없음	10만제곱미터 이상
(4) 광역권 근린공원(하나 의 도시지역을 초과하는 광역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 린공원)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 없음	100만제곱미터 이상
2. 주제공원			
가. 역사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나. 문화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다. 수변공원	하천·호수 등의 수변과 접하고 있어 친수공간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라. 묘지공원	조성할 수 있는 곳에 설치 정숙한 장소로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	제한 없음	10만제곱미터 이상
마. 체육공원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 없음	1만제곱미터 이상
바. 도시농업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만제곱미터 이상
사.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